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465 제출연월일: 2024. 12. 13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계측업자가 일시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계측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2조제2항 중 "휴업"을 "30일 이상 휴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계측업의 등록) ① (생	제22조(계측업의 등록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계측업을 등록	②
한 자(이하 "계측업자"라 한다)	
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<u>휴업</u> 하려	<u>30일 이상</u>
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	<u> 휴업</u>
정하는 바에 따라 시 · 도지사에	
게 신고하여야 한다.	